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5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67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17.

## 주 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2,829,870원의 부과처분 중 290,950,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1,282,980원의 부과처분 중 29,09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17,689,710원의 부과처분 중 109,45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2,829,870원, 농어촌특별세 31,282,9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원, 가산세 117,689,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4.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redacted]어 건물(연면적 합계 61,149.7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연면적 가운데 9,505.65㎡ 만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나머지 51,644.14㎡ 만큼은 프로그램 제작 및 임대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3,283,556,870원, 농어촌특별세 251,587,610원, 지방교육세 153,536,130원, 합계 3,688,68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30.부터 2015.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면적은 14,484.90㎡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부분 중 4,979.25㎡(= 14,484.90㎡ - 9,505.65㎡) 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세무조사결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 부분의 면적과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의 면적 차이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증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된 취득세 312,829,870원, 농어촌특별세 31,282,980원, 가산세 117,689,710원, 합계 461,802,5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하1층 임원차량 대기실(B103-2호), 4층 휴게/홍보실(419호), 7층 창고(713호)는 신축건물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임직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장소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문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명백히 본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원고의 사업 또는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관리 기능 수행 및 그와 관련된 기업의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외에, 아래와 같은 장소들은 단순히 개별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집 공정의 일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과하므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아래의 장소들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1층 미디어 전시실(103호): 원고의 사업장을 견학하는 방문객들이 방송제작 과정을 참관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② 2층 글로벌뉴스센터(201-1호): 글로벌기획팀(해외방송사 프로그램 공급계약 및 관리, 외신사 뉴스화면 판매 및 위성 송출 서비스 등), 해외방송팀(재외동포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해외통신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주로 제작된 영상물의 편집 작업이 이루어진다.

③ 3층 보도국사무실(301호), 뉴스기획팀(301-1호), 영상취재실(302호), 영상편집실(303호), 4층 보도국편집부(401호): 보도국사무실(301호)은 영상부(영상 아카이브팀), 취재1부(정치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취재2부(경제부, 문화사회정책부, 과학기상팀, 스포츠부), 뉴스기획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뉴스기획팀에서 중장기 취재계획을 수립하고 취재대상 선정 및 각 부서의 업무조정 등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프로그램 제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일 뿐, 회사영업활동 전반에 관한 경영기획과는 다르고, 그밖에 나머지 팀들은 모두 영상교정, 편집,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뉴스 등 분야별 각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 등의 활동만을 수행한다. 영상취재실(302호)은 영상기자들이 취재 전에 대기하면서 취재물에 대한 사전자료 · 정보 수집, 취재 구상 등을 하고, 촬영장비를 운영 · 관리하는 곳이며, 영상편집실(303호)은 보도영상을 편집하는 장소이다. 4층의 보도국편집부(401호)는 편집 1, 2, 3, 4부, 앵커팀, 뉴스지원팀, 콘텐츠제작팀, 그래픽팀 등 다양한 팀들이 뉴스 편집, 그래픽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④ 5층 웨더라이프국(501호), 6층 사이언스TV본부(601호): 웨더라이프국(501호)에서는 YTN Life 채널에서 방송되는 기상방송을 위한 기획, 편성, 편집, 제작 작업이, 사이언스TV본부(601호)에서는 사이언스TV 채널에서 방영되는 과학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편집, 제작 작업이 각 이루어지는데, 위 채널들은 보도국에서 제작된 방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을 보도하는 [redacted] 채널과 별도의 채널이다.

⑤ 종합편집실(602호), 데크공간(뉴스채널 편성운영국): 종합편집실(602호)에서는 [redacted] 채널에서 보도되는 기획제작물의 자막, 특수효과, 그래픽, 성우의 더빙 삽입 작업을, 데크공간에서는 편성제작국에 속한 편성팀, 제작1팀, 제작2팀이 출연진 섭외,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제작완료된 프로그램의 편집, 방송 스케줄 편성 등의 활동을 한다.

⑥ 9층 마케팅국(900호), 기술국(900-1호): 마케팅국(900호)은 통합마케팅팀(광고 편성 및 운영 업무), 마케팅기획팀(광고 영업 기획), 마케팅 1, 2, 3팀 및 네트워크 마케팅팀(방송광고 수주 등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활동 수행)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광고영업활동 및 광고의 제작, 편집, 편성 작업에 사용된다. 기술국(900-1호)은 방송장비 및 방송시설을 관리, 정비, 수리하는 곳으로서, 기술기획팀(방송기술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인프라팀(방송기술 인프라 구축 · 관리 전반 담당), 송출기술부(방송프로그램의 송출 업무), 제작기술부 1, 2팀(뉴스 및 방송물 제작 관련 업무), 중계부(중계 프로그램 관련 업무 담당), 장비관리팀(방송기재, 부품 수급계획 주관 업무), 기술연구소(디지털방송시스템 연구 및 개발 업무)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9. 14. 설립되어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및 공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redacted] 채널과 [redacted]Science(과학채널), [redacted]Life(기상-생활정보채널),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World(해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뉴스채널)의 4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 제작 · 송신하는 방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본점을 두고, 신속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전국에 12개의 지국(강릉,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창원, 울산, 전주, 제주, 청주, 춘천, 수원)을, 해외에 6개의 지국(워싱턴, 뉴욕, 엘에이, 베이징, 도쿄, 런던)을 각 두고 있는데, 국내 지국에는 기자 3~4명이, 해외지국에는 기자 1명이 지방이나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 · 사고 소식을 취재하기 위하여 상주하고 있다. 원고 조직 내의 주요 부서로는 총괄상무(기획조정실, 총무국), 경영본부(마케팅국, 미디어사업국, 타워사업국), 보도본부(보도국, 앵커실, 편성제작국, 기술국, 사이언스TV국, 웨더라이프국, 글로벌뉴스센터, 해설위원실)가 있다.

3) 뉴스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처의 기자가 뉴스 항목, 형식, 시간대 등을 제안하는 취재계획을 작성 · 제출하면, ② 각 부처의 데스크에서 그 제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이 주요뉴스와 방향을 설정하고, ③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기자들이 기사의 대략적인 방향과 취재진행계획을 수립하여 취재 당일 취재활동과 기사를 작성하며, ④ 취재 당일 오후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주요뉴스의 편성을 결정하면 각 부처의 데스크에서 취재내용 및 기사 확인 후 기자와 카메라팀이 편집실에서 뉴스영상 편집 작업을 하여 방송이 송출되고, ⑤ 뉴스마감 후 간부들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4)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B103-2호는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에 '임원차량 대기실'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층 침대가 갖추어져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휴게공간처럼 임원차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외의 다른 취재차량 기사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4층 419호는 위 사용계획서에 '휴식/홍보공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탁자와 소파, 자판기 등이 비치되어 있는 휴게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7층 713호는 위 사용계획서에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탁자와 소파, 정수기, 화분 등이 비치되어 있는 휴게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13년 10월경 작성된 이 사건 건물의 도면(갑 제8호증)에는 419호와 713호가 모두 휴게공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5) 1층 미디어 전시실은 방문객들이 방송 제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스튜디오'와 기상방송 등의 방송제작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간이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6) 그밖에 원고가 본점 사업용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내역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 복지후생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본점의 사무소가 아닌 영업용 부동산이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08 결정 참조).

여기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중에서도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후생시설'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위 규정이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이라는 문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부대시설 가운데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위 시행규칙에서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시설로 들고 있는 유형이 유사하고 양 규정에서 중과대상 제외 시설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③ 복지후생시설의 경우 그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킨다고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복지후생시설의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동일하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열된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은 예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시설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휴게실' 등 사원들의 휴식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공간 역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지하1층 임원차량 대기실(B103-2호)은 원고의 임원차량 또는 취재차량 기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4층 휴게/홍보실(419호)과 7층 창고(713호)는 임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각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 가운데 지하1층 '임원차량 대기실(B103-2호)'과 7층 '창고(713호)'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중과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2)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무소'는 사무실과 비슷한 의미로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장소 등'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양자의 구별은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및 공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은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 달리, 하나의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편집 등의 작업이 매번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달방식이나 편집, 기획자의 의도 등에 따라 결과물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가 누적되어 방송국 전체의 성향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시청자 층의 형성이나 시청률 등이 결정되고 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의 프로그램, 나아가 그 중의 한 장면만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제작의 방향의 결정 뿐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집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과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본점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사항뿐 아니라, 법인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역시 본점 사무소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앞서 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같이 내부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여러 단계의 유기적인 의견교환 및 협업이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가 본점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① 내지 ⑥ 사유에 관하여 본다.

(1) ① 사유: 1층 미디어 전시실(103호)이 원고의 본점을 견학하는 방문객들에게 방송제작 과정을 참관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러한 체험공간은 원고의 업무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또는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②, ④ 사유: 2층 글로벌뉴스센터(201-1호), 5층 웨더라이프국(501호), 6층 사이언스TV본부(601호)의 경우 각 해외송출을 위한 방송, 기상방송, 과학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집하는 활동을 하는데, 위와 같은 활동은 위 각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일련의 전 과정으로서 원고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글로벌뉴스센터, 웨더라이프국, 사이언스TV국은 보도본부에 속하여,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송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보도국 및 상위부서나 임원들과의 의견교환 및 협업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글로벌뉴스센터(201-1호), 웨더라이프국(501호), 사이언스TV본부(601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집 등의 활동을 단순히 부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이유 없다.

(3) ③, ⑤ 사유: 3층 보도국사무실(301호), 영상취재실(302호), 영상편집실(303호), 4층 보도국편집부(401호), 6층 종합편집실(602호), 데크공간의 경우 중장기 취재계획의 수립 및 취재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뉴스기획팀이 3층 보도국사무실을 이용할 뿐 아니라, 보도국이나 편성제작국에 속하는 다른 팀들이 위 각 공간에서 수행하는 업무 역시 원고가 운영하는 주된 채널인 [redacted]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집, 편성 등의 업무로서, 상위 부서 및 임원들과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위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편집 등의 활동만을 따로 떼어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⑥ 사유: 9층 마케팅국(900호), 기술국(900-1호)은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에 관한 방송광고 수주 및 영업의 기획, 광고 편성 등 업무와 원고의 방송장비 및 방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 정비, 수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서, 방송사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위 각 분야에 관하여 상위부서와 연계하여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본점 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활동이 모두 원고의 주된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결국 지하1층 임원차량 대기실(B103-2호, 41.21㎡), 4층 휴게/홍보실(419호, 108.48㎡), 7층 창고(713호, 26.53㎡) 및 1층 미디어 전시실(103호, 169.84㎡)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위 면적 합계 346.06㎡(= 41.21㎡ + 108.48㎡ + 26.53㎡ + 169.84㎡) 만큼에 관하여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사건 처분으로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90,950,980원, 농어촌특별세 29,095,090원, 가산세 109,458,650원이다(피고의 2018. 5. 15.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끝>